

의 결



국민권익위원회

ACRC

국 민 권 의 위 원 회

의 결

의안번호 제2022 - 860호

의 안 명 「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개선방안」

대상기관 인천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, 전라남도,
제주특별자치도

의 결 일 2022. 12. 19.

주 문

「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개선방안」을 별지와 같이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, 광주광역시장, 대전광역시장, 세종특별자치시장, 충청남도지사, 전라남도지사,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고한다.

이 유

별지와 같다.



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2022년 12월 19일

위 원 장 전 현 희

위 원 안 성 욱

위 원 김 태 규

위 원 김 기 표

위 원 박 계 욱

위 원 박 상 희

위 원 박 홍 규

위 원 임 성 문

위 원 방 이 엽

위 원 손 난 주

위 원 최 정 목

위 원 송 현 주

위 원 홍 세 욱



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개선방안

2022. 12.



국민권익위원회



|| 순 서 ||

I. 추진배경 및 경과	1
II. 제도 현황	2
III. 문제점	6
1.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저조	6
2. 화재공제 가입률의 지역적 편차 발생	8
3. 지자체의 화재공제료 지원 미흡	9
4.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화재공제 가입 제한	10
IV. 개선방안	12
1. 지자체의 화재공제료 지원 및 근거 마련	12
2. 미등록 사업자 화재공제 가입 방안 마련 등	13
V. 조치사항	14



I. 추진배경 및 경과

□ 추진배경

- 전통시장 화재와 관련하여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화재공제 사업을 운영
 - ※ 최근 5년간('17년~'21년) 전통시장 화재 재산피해액은 건당 약 3.3억 원으로 전체(건당 1,800만 원) 대비 약 18배 수준으로 화재 대비 보험(공제) 가입 필요성 상당
- 그러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30% 미만으로 저조
 - '22. 9월 기준 화재공제 가입률은 24.6%에 불과(영업중인 181,975개 점포 중 44,777개)하며, 가입률은 증가 추세*이나 여전히 낮은 수준
 - * 가입률 추이 : ('20년) 14.8% → ('21년) 19.7% → ('22.9월) 24.6%
- 또한 일부 지자체의 공제료 미지원 및 지원 근거 불분명 등 화재공제사업 운영상 지역적 편차 발생
 - ※ 전국 17개 시·도 중 5개 지역은 화재공제료 미지원, 공제료 지원 12개 시·도 중 2개 지역은 지원 근거 불분명
- 이에, 화재공제 공제료 지원 및 근거 마련 등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

□ 추진경과

- 실태조사 : '22.8. ~ 10.
-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협의 : '22.11. ~ 12.
- 위원회 상정 및 권고 : '22.12.



II. 제도 현황

□ 전통시장의 종류

- 전통시장은 외부형태에 따라 건물형, 노점형, 장옥형, 상가주택 복합형으로 구분
 - **(건물형)** 대형 단일 건물 또는 건물 몇 동이 연결되어 운영되는 시장
 - **(노점형)** 노점상으로 구성된 시장(장터 주위에 상설점포가 있는 경우도 포함)
 - ※ 상설 점포가 구성되어 있으나 시장기능(판매활동 등)은 대부분 노점이 차지하거나 전체 시장 기능 중 노점의 비중이 더 큰 경우 등
 - **(장옥형)** 일정한 건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, 일정한 장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재화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장옥으로만 구성된 시장
 - **(상가주택 복합형)** 골목형 시장 등과 같이 1개 이상의 건물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시장

□ 전통시장 개요

- 영업중인 전통시장 수 : 총 1,401개
 - '20년 기준 건물형 712개, 노점형 16개, 장옥형 151개, 상가주택 복합형 522개

(단위 : 개)

구분	'18년	'19년	'20년
계	1,437	1,413	1,401
건물형	732	717	712
노점형	20	29	16
장옥형	160	162	151
상가주택 복합형	525	505	522

<2019년, 2020년 전통시장·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>

○ 전통시장 내 점포 수 : 총 207,145개

- '20년 기준 영업중 점포 181,975개(87.8%), 빈 점포 20,615개(10.0%), 기타 점포*는 4,555개(2.2%)

* 기타 점포 : 창고 및 사무실 등 영업 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포

(단위 : 개)

구분	'18년	'19년	'20년
계	205,271	207,643	207,145
영업중 점포	184,412	182,617	181,975
빈 점포	17,587	19,818	20,615
기타 점포	3,272	5,208	4,555

<2019년, 2020년 전통시장·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>

○ 전통시장 내 노점 수 : 총 33,478개

- '20년 기준 노점 수는 33,478개로 '19년 34,004개 대비 526개 감소

(단위 : 개)

구분	'18년	'19년	'20년
노점	38,169	34,004	33,478

<2019년, 2020년 전통시장·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>

○ 전통시장 내 점포의 사업자등록률 : 81.6%

- '20년 기준 전통시장 내 점포의 사업자등록률은 81.6%이고, 건물형이 85.5%로 가장 높고, 장옥형이 59.5%로 가장 낮음

(단위 : %)

구분	평균	건물형	노점형	장옥형	상가주택 복합형
사업자등록률	81.6	85.5	75.1	59.5	82.2

<2020년 전통시장·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>

□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개요

- (사업목적) 화재 관련 민간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안전망 구축 지원
- (지원내용) 상인 스스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,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사업 운영
 - ※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, 지원예산은 연간 10억원 수준
- (가입조건)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
- (가입실적) '22.9월 기준 화재공제 가입률은 24.6%
 - ※ 영업중인 181,975개 점포 중 44,777개

<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현황(연도별, 시·도별)>

(단위 : 개)

구분	전체 영업점포*	2017년		2018년		2019년		2020년		2021년		2022년 9월	
		가입수	가입률	가입수	가입률	가입수	가입률	가입수	가입률	가입수	가입률	가입수	가입률
서울	42,432	3,017	7.1%	4,481	10.6%	5,930	14.0%	5,408	12.7%	6,791	16.0%	7,082	16.7%
부산	23,876	242	1.0%	505	2.1%	467	2.0%	2,446	10.2%	3,467	14.5%	5,897	24.7%
인천	11,248	177	1.6%	1,250	11.1%	1,432	12.7%	1,847	16.4%	2,542	22.6%	2,513	22.3%
대구	13,088	263	2.0%	247	1.9%	280	2.1%	687	5.2%	1,150	8.8%	2,832	21.6%
광주	2,991	40	1.3%	31	1.0%	134	4.5%	267	8.9%	527	17.6%	563	18.8%
대전	2,790	31	1.1%	36	1.3%	466	16.7%	544	19.5%	742	26.6%	900	32.3%
울산	3,537	186	5.3%	287	8.1%	486	13.7%	902	25.5%	1,134	32.1%	1,193	33.7%
세종	519	3	0.6%	1	0.2%	69	13.3%	87	16.8%	108	20.8%	94	18.1%
경기	18,158	1,135	6.3%	1,499	8.3%	2,813	15.5%	2,880	15.9%	5,010	27.6%	6,347	35.0%
강원	6,886	734	10.7%	1,490	21.6%	2,031	29.5%	2,120	30.8%	2,447	35.5%	2,592	37.6%
충북	5,956	45	0.8%	176	3.0%	1,466	24.6%	1,445	24.3%	1,631	27.4%	2,042	34.3%
충남	6,475	171	2.6%	302	4.7%	672	10.4%	1,340	20.7%	1,632	25.2%	1,472	22.7%
전북	4,515	262	5.8%	843	18.7%	982	21.7%	1,066	23.6%	1,338	29.6%	1,291	28.6%
전남	6,035	362	6.0%	512	8.5%	830	13.8%	1,251	20.7%	1,536	25.5%	1,650	27.3%
경북	14,916	82	0.5%	119	0.8%	1,543	10.3%	2,382	16.0%	2,892	19.4%	3,873	26.0%
경남	14,842	253	1.7%	552	3.7%	2,101	14.2%	2,066	13.9%	2,663	17.9%	3,788	25.5%
제주	3,711	50	1.3%	49	1.3%	88	2.4%	183	4.9%	255	6.9%	648	17.5%
합계	181,975	7,053	3.9%	12,380	6.8%	21,790	12.0%	26,921	14.8%	35,865	19.7%	44,777	24.6%

* 전체 영업점포 수 : '20년 실태조사 기준, 전체 181,975개 점포

<자료출처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출자료>

□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현황

<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현황>

구분		2천만원 (건물/동산 각 1천만원)	4천만원 (건물/동산 각 2천만원)	6천만원 (건물/동산 각 3천만원)
주계약 (재물 손해)	A급	연 66,000원	연 132,000원	연 198,000원
	B급	연 101,500원	연 203,000원	연 304,500원
특약	화재 배상책임	- 추가공제료 : 연 6,200원 - 대인 : 1인당 사망 1억원, 부상 2천만원 한도 - 대물 : 1억원 한도		
	임차자 배상책임	- 가입 시 건물 요율의 10% 할인 적용		
	음식물 배상책임	- 추가공제료 : 연 16,600원(자기부담금 30만원) - 대인 : 1인당 1천만원, 1사고당 1억원 한도 - 대물 : 1사고당 1천만원, 공제기간 중 총 5천만원 한도		
	화재벌금	- 추가공제료 : 연 100원 - 벌금형 확정 판결 시 (형법 제170조) 1천5백만원 / (형법 제171조) 2천만원		
	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	- 추가공제료 : 연 26,600원(자기부담금 10만원) - 대인 : 1인당 1천만원, 1사고당 1억원 한도 - 대물 : 1사고당 1억원, 공제기간 중 1억원 한도		
	점포 휴업 일당	- 추가공제료 : 연 2,400원 - 1일당 5만원(1사고당 30일 한도, 매 1년마다 총 60일 한도) -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최초 3일까지 발생한 손해는 미보상		

※ 주계약의 경우 1백만원 단위로 가입 가능, 가입한도 최대 6천만원(건물/동산 각 3천만원)

- 공제료 : 연납, 건물구조급수에 따라 2개 등급(A,B)으로 차등

- A급 건물 : 건축물대장 상 철근콘크리트 조 / 슬래브 또는 불연재료 지붕 해당 점포

B급 건물 : A급 건물 구조 외 기타 구조의 건물

○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제료는 민간 화재보험 대비 약 60% 수준

<전통시장 화재공제 및 민간 화재보험 비교>

구분	전통시장 화재공제	○○ 상점가 화재보험
가입조건	A,B 등급 중 A급 건물, 1년	A~E등급 중 A,B 등급, 1년
가입상품	보장한도 2천만원, 5개 특약	좌동
공제(보험)료	117,800원	196,100원

※ 총보험료는 건물등급, 종류에 따라 상이, 매년 달라질 수 있음

Ⅲ. 문제점

1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저조

□ 전통시장 화재 지속 발생

- 최근 5년간('17년~'21년) 전통시장 화재 발생 건수는 254건(연평균 50.8건)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

※ 화재발생 추이 : ('17년) 31건 → ('19년) 46건 → ('21년) 57건

-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837억원, 화재 1건당 약 3.3억원으로 전체 화재 건당 피해액 1,800만원 대비 약 18배 수준

<전통시장 화재 발생 및 피해 현황>

(단위 : 건, 천원)

구분	화재건수	인명피해	재산피해	
			전체	건당
계	254	20	83,771,508	329,809
2021년	57	2	994,677	17,450
2020년	65	3	2,849,983	43,845
2019년	46	12	76,589,196	1,664,982
2018년	55	2	1,224,666	22,266
2017년	31	1	2,112,986	68,160

<자료출처 : 2017년 ~ 2021년 화재 통계연감>



□ 지속적 화재 발생에도 화재공제 가입 저조

- '22. 9월 기준 화재공제 가입률은 **24.6%**에 불과(영업중인 181,975개 점포 중 44,777개)하며, 가입률은 증가 추세*이나 여전히 낮은 수준

* 가입률 추이 : ('20년) 14.8% → ('21년) 19.7% → ('22.9월) 24.6%

<전통시장 화재공제 연도별 가입현황>

(단위 : 개)

전체 영업점포*	2018년		2019년		2020년		2021년		2022년 9월	
	가입 점포수	가입률	가입 점포수	가입률	가입 점포수	가입률	가입 점포수	가입률	가입 점포수	가입률
181,975	12,380	6.8%	21,790	12.0%	26,921	14.8%	35,865	19.7%	44,777	24.6%

* 전체 영업점포 수 : '20년 실태조사 기준, 전체 181,975개 점포

- 상당수의 점포가 보험료 부담(46.9%), 가입 필요성 못 느낌(45.8%) 등의 사유로 화재보험에 미가입

<화재보험 미가입 사유>

(단위 : %)

계	필요성 못 느낌	정보부족	보험료 부담	보험제도 불신	기타
100	45.8	3.6	46.9	0.8	2.9

<출처 : 2020년 전통시장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>

- 민간보험을 포함하더라도 화재보험(민간보험+화재공제) 가입률은 53.5%로 전통시장 상인의 과반수가 생업안전망 사각지대에 방치

2 화재공제 가입률의 지역적 편차 발생

□ 화재공제 가입률의 지역적 편차 발생

-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지역별 편차가 심하여 가장 낮은 지역의 가입률은 가장 높은 지역의 절반 수준
 - '22.9월 기준 가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으로 가입률은 37.6%이고,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가입률은 16.7%로 가입률의 최고·최저 편차가 20.9%p
 - 가입률이 평균(24.6%)을 밑도는 지역은 서울, 인천, 광주, 세종, 충남, 제주 등 6개로 전국 17개 시·도의 1/3 수준

<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(시·도별)>

(단위 : %)

구분	평균	서울	부산	인천	대구	광주	대전	울산	세종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증감(%p)	4.9	0.7	10.2	-0.3	12.8	1.2	5.7	1.6	-2.7	7.4	2.1	6.9	-2.5	-1.0	1.8	6.6	7.6	10.6
2022.9월	24.6	16.7	24.7	22.3	21.6	18.8	32.3	33.7	18.1	35.0	37.6	34.3	22.7	28.6	27.3	26.0	25.5	17.5
2021년	19.7	16.0	14.5	22.6	8.8	17.6	26.6	32.1	20.8	27.6	35.5	27.4	25.2	29.6	25.5	19.4	17.9	6.9

※ 가입률은 '20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체 181,975개 점포 기준 산출

□ 화재공제 가입률 감소 지역 발생

- 인천(-0.3%), 세종(-2.7%), 충남(-2.5%), 전북(-1.0%)의 '22년도 화재공제 가입률은 전년 대비 오히려 감소

3 지자체의 화재공제로 지원 미흡

- 지방자치단체는 화재공제 가입 확대 및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제가입 시 납입한 공제로 중 일부를 지원

<지자체의 공제로 지원 개요>

- (근거)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,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
- (지원금액) 공제로의 60~90% 수준
 - ※ 90% 지원은 1개 지역, 70% 지원은 3개 지역, 60% 지원은 8개 지역
- (지원방식) 가입자가 공제로 선납 후 지자체가 공제로 중 일부 환급

- 그러나 17개 시·도 중 5개 지역(인천, 광주, 대전, 세종, 제주)은 화재 공제로 미지원

<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현황(시·도별)>

(단위 : %)

구분	서울	부산	인천	대구	광주	대전	울산	세종	경기*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지원율	60	60	-	70	-	-	60	-	90	60	70	60	70	60	60	60	-

* 경기도는 '22년까지 90%를 지원하나, '23년부터는 60% 지원 예정

※ 충북, 충남, 전북, 경북, 경남은 지원금액 한도 설정(연 10~12만원 수준)

- 공제료를 지원하는 12개 시·도 중 10개 지역은 조례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, 2개 지역(충남, 전남)은 조례상 지원 근거 불분명

《 지원 근거 불분명 사례 》

<○○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>

제6조(지원사업) 도지시는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경영현대화 촉진 사업
2. 시설현대화 사업
3. 청년상인 육성사업
4. 화재위험 점검 및 그에 따른 시설보완 지원사업
5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□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화재공제 가입 제한

- 현행 규정은 미등록 사업자의 화재공제 가입을 제한하지 않음에도
실제는 사업자등록 유무로 공제가입을 제한

※ 법령상 화재공제 가입조건은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 영위 여부임

<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>

제9조의6(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) ①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
자는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으로 한다.

- 약 20%에 이르는 사업자 미등록자는 공제가입이 불가하여 화재
대비 사회안전망에서 소외

※ 2020년 전통시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시장 사업자 중 사업자
미등록 비율은 18.4%

<전통시장 내 점포의 사업자등록률>

(단위 : %)

구분	평균	건물형	노점형	장옥형	상가주택 복합형
사업자등록률	81.6	85.5	75.1	59.5	82.2

<2020년 전통시장·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>

- 공제가입 조건인 '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 영위' 여부 확인*은
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현장 조사로 확인 가능

* 공제가입 신청 후 공단에서 가입신청사항 검토 시 확인

- 화재공제 가입률 산정시에도 미등록 사업자를 포함한 영업중인 점포를
대상으로 산정



□ 유사 공제사업의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가입 허용 및 지원

- 전통시장 화재공제와 유사한 공제사업인 노란우산공제*는 사업자 등록이 없는 소상공인도 영업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면 가입 가능

* 노란우산공제 :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(목돈마련)을 위한 공제제도

- 전통시장 내 사업자의 98.6% 이상이 소상공인이고, 이들은 모두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

※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의 기준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. 단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

<전통시장 점포의 종사자 규모별 분포>

(단위 : %)

구분	계	5명 미만					5명 이상
		소계	1명	2명	3명	4명	
2020년	100	98.6	53.3	37.3	6.2	1.8	1.4

※ 종사자는 무급가족 종사자, 일용임시직 근로자, 상용 근로자를 모두 포함

- 코로나19 관련 민생지원금 등 전통시장 내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사례 有

《 미등록 사업자 지원 사례 》

- ○○군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미등록 사업자 상인들에게 민생지원금 지급(2021. 5. 11 언론보도)



IV. 개선 방안

1 지자체의 화재공제료 지원 및 근거 마련

□ 공제료 미지원 지자체의 공제료 지원 및 근거 마련

-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 및 화재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제료 지원 및 근거 마련

- 공제료 미지원 5개 시·도* 공제료 지원 및 근거 마련

* 미지원 5개 시도 : 인천, 광주, 대전, 세종, 제주

⇒ (인천, 광주, 대전, 세종, 제주) 화재공제료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 등 개정

□ 공제료 지원 근거가 불명확한 지자체의 지원 근거 명확화

- 지속적인 화재공제료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에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가 불명확한 지자체*는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

※ 공제료를 지원하나 조례상 지원 근거가 불명확한 지자체 : 충남, 전남

⇒ (충남, 전남) 화재공제료 지원 관련 조례 등 개정

<참고> 공제료 지원 근거가 조례상 명확히 규정된 사례

기관명	화재공제료 지원 근거
부산광역시	「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의2(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) 시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<제안 이유>

-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 먼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미등록 사업자의 화재공제 가입을 독려 중임
-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방안과 함께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화재공제 가입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

-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, 미등록 사업자의 화재 대비 사회안전망 소외 문제 등 해소를 위해 미등록 사업자의 화재공제 가입 방안 마련

※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방안 마련 포함

V. 조치사항

- 권고대상 : 인천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제주특별자치도, 충청남도, 전라남도

□ 조치사항

구 분	세 부 과 제	관련기관 (조치기한)
① 지자체의 화재공제료 지원 및 근거 마련	○ 공제료 미지원 지자체의 공제료 지원 및 근거 마련 * 공제료 미지원 지자체 : 인천, 광주, 대전, 세종, 제주 ⇒ 화재공제료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 등 개정	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(‘23.12월)
	○ 공제료 지원 근거가 불명확한 지자체의 지원 근거 명확화 - 관련 조례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 ⇒ 화재공제료 지원 관련 조례 등 개정	충청남도 전라남도 (‘23.12월)
② 미등록 사업자 화재 공제 가입 방안 마련 등	○ 미등록 사업자 화재공제 가입 방안 등 마련 -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, 미등록 사업자의 화재 대비 사회안전망 소외 문제 등 해소를 위해 미등록 사업자의 화재 공제 가입방안 마련 ※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방안 마련 포함	중소벤처기업부 (정책제안)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제24조의2(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) ①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, 가입·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
제9조의3(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) ① 공단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(이하 “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”이라 한다)을 운영한다.

②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제9조의8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운영계획(이하 “공제운영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공제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자금의 조성계획
2.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자금의 사용계획
3. 그 밖에 제9조의13제1항에 따른 공제운영요강(이하 “공제운영요강”이라 한다)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9조의5(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)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자가 제9조의7에 따른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
2.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및 점포의 안전시설물 점검 등 제1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

제9조의6(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) ①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으로 한다.

②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를 낼 것과 제9조의7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(이하 “공제계약”이라 한다)을 공단과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일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가입자가 첫 회의 공제료를 낸 날로 한다.

④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공제료를 공단에 내야 한다.

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시장을 우대하는 등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정 본 입 니 다 .

2022. 12. 20.

국 민 권 의 위 원 회



A C R C